

문 수술후 또는 소화관 특수질환자에게 외과 영양공급목적으로 사용되는 Elental의 보험급여 여부와 Elental의 공급시 사용되는 경관영양주입용 카테타, 튜브 및 Bag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.

답 단백아미노산제재인 Elental은 종전의 정맥주사를 통한 영양공급방법과는 달리 경관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임상연구단계에 있으며 보편적인 진료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요양급여기준Ⅲ-14에 의거하여 비급여 대상으로 합니다.

문 임파구 살해세포를 이용한 면역치료법의 의료보험환자에게 시행했을 경우 보험급여 및 수가 산정방법을 알려 주십시오.

답 암치료 목적으로 실시하는 임파구살해세포를 이용한 면역치료법은 현재 국내에서 연구단계에 있으며 공인된 치료법이 아니므로 요양급여 기준1-마 및Ⅲ급여대상14에 위거 비급여대상으로 합니다.

문 클라메디아검사를 효소면역법으로 실시할 경우 보험급여 여부와 수가중용 항목은 무엇입니까?

답 효소면역법에 의한 클라메디아 검사는 진료수가 기준 제2장 검사료 중 효소면역 측정의 바 이러스검사(나-508)의 1/2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정하기 바랍니다.

문 방사선촬영 조영제로 최근에 수입되고 있는 Iopamiro 및 Niopam은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판토파큐와는 달리 수용성으로서 약물 자

체가 부작용이 적고 조작방법이 용이하며 검사기간이 단축되는 여러가지 잇점이 있는데 보험환자에게 사용할 때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려 주십시오.

답 Iopamiro와 Niopam에 대하여 검토하였던 바 위의 조영제는 그 조성성분이 요오파미돌 6·12그램으로 상품명에 상이한 동일 조영제로 주로 뇌저 및 뇌실, 척수신경, 동·정맥 혈관 조영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동·정맥 혈관 조영시에는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Conray, 하이파큐 등을 사용하는 것보다 월등히 고가이므로 Iopamiro나 Niopam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뇌저 및 뇌실 조영이나 척수신경 조영시에는 현재 보험적용이 되는 판토파큐를 사용할 때보다 그비용이 적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판토파큐 대신 Iopamiro나 Niopam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.

문 자동분석기에 의한 12종 내지 13종 검사시 해당 검사종목의 소정 총검사료의 70%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기기의 노후등으로 12종미만의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료 산정 방법은 무엇입니까?

답 자동분석기의 일부고장으로 12종 미만의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병의 종류에 따른 필요한 검사만 일정하게 되므로 필요한 검사료의 소정금액을 각각 인정하여야 합니다.

문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표 제10장 치과 항목 중 치수절단(차-9) 처치시 1일에 치수 절단을 한 후 아말감 충전까지를 끝낼 경우

즉일 충전처치를(차-6)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.

답 충전처치는 치수절단을 시행한 후 일정기간(1주-10주 정도) 동안 경과를 관찰하여 시행하는 것이 보통이나 소아의 경우에는 치수 절단후 당일에 충전처치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당일에 치수절단(차-9) 즉일 충전처치(차-6)를 각각 시행하였으면 그 비용은 각각 산정할 수 있습니다.

문 치아에 충치가 진행되어 치수강(Pulp Chamber)에까지 침범되어 신경치료를 하여 줌으로써 치아를 발치하지 아니하고 보존시키기 위한 처치에서 이 때 사용되는 1회용 진료재료 Barbed-Broach (구입가격 1개당 125원)를 별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근과 확대시 사용되는 리-마 화일의 재료대를 별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.

답 신경발수시에 사용하는 Barbed Broach 등 1회용 재료에 대하여는 소정처치 및 수술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리-마 화일도 수회 사용이 가능한 내구성 재료이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.

문 수술환자에게 혈관노출술을 실시하지 않는 것점이 있고 수술중 출혈과다시 조치가 용이하여 엔지오 니들을 사용하는 바 마취회복시 무의식중 동작으로 인한 혈관파열의 방지 효과가 있으므로 혈관노출술을 요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타수술 환자에도 1개씩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기 바랍니다.

답 정맥주사가 곤란하여 혈관노출술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환자에게 혈관노출술 대신 사용

한 경우에 한하여 Angio needle, medicult Ven-flow, Jelco-needle, venca 와 같은 유치침(1회 사용용)의 재료대는 치료 기간중 1개의 비용만 실 구입가에 의거 산정할 수 있습니다.

문 우측 인지, 환지 및 중지의 격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Buerger's Disease 환자에 대하여 우측성상 신경절차단 및 상박신경 총차단법을 매일 시행하고 있는 바 보험급여 여부와 진료비 산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.

답 이 환자에 대하여 정상신경절 블럭(바-4라)은 매일 시행하나 상박신경총블럭(바-4-가)은 격일로 시행하므로 정상신경절 블럭만 실시한 경우에는 (바-4-라)의 소정금액만 산정하고 정상신경절 블럭과 상박신경총블럭을 같은 날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료수가 기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(6)에 의거 상박신경총블럭(바-4-가)의 소정금액만 산정하여야 합니다. 동일한 시술에 사용된 약제인 부피바카인은 마취료 산정지침(2)에 의거하여 실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.

문 혈관조영촬영시 사용하는 가이드와이어 삽입에 따른 혈관 손상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Introducer 와 혈관의 기능상 조영제를 일시적으로 과량 투여하는 것이 요구될 때 혈관의 안전을 위하여 카테타를 교체하기 위한 재료인 Vessel Dilator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알려주기 바랍니다.

답 Introducer는 조영촬영시 카테타를 2회 이상 교환하거나 Balloon Catheter 등의 특수 카테타를 삽입할 필요가 있을 때, 카테타 삽입 또는 제거할 시 혈관손상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

하여 사용되는 것인 바, 혈관조영촬영시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특수카테타가 사용되는 비관혈적 경피적 관상동맥술(PTCA), 또는 경피적 폐동맥 판막성형술(Trans Catheter pulmonary Valvuloplasty)을 할 때에만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Vessel Dilator 및 Sheath 등의 재료대를 각각 산정할 수 없습니다. 혈관조영촬영시 사용되는 Vessel Dilator는 카테타를 혈관에 삽입할 때 혈관을 넓히기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이나 진로수가 기준 제3장 방사선진단 및 치료료 산정지침(2)항에 의거하여 가이드 와이어, 카테타만 산정할 수 있도록 고시하고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.

문 Swan-Ganz pressure monitoring Catheter는 Balloon이 부착되어 X-Ray 기계 없이 심장내에 삽입하여 각심실, 심방의 압력, 산소농도 및 심장운동상태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재료인 바, 위의 재료대를 별도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.

답 순환기능검사(심장카테타법에 의한 것) (나-653-나) 일 때에는 Pigtail, Courmand NIH Catheter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X-Ray기계 없이 삽입이 용이하다 하여 보다 고가인 Swan-Ganz pressure monitoring Catheter를 사용하는 것은 적정진료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. *

□ 編輯委員 : 韓斗鎭 朴利甲 金敎命 黃泰植 梁萬奎

대한병원협회지

(通卷 133 號)

'86년 4 월호(月刊)

등록일자: 1972년 4월27일

등록번호: 제 라 1691호

인쇄일: 1986년 3월 31일

발행일: 1986년 4월 1일

發行人: 白樂院

編輯人: 黃泰植

印刷人: 金善勲

발행소 社團法人 大韓病院協會

우편번호 11000

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가49 전화: 272-8905

JOURNAL OF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

Vol 15, No. 4

Apr, 1986

Publisher: Nak Whan Paik

Editor in Chief: Tae Sik Hwang

Published Monthly

by

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

49, 2-Ga, Chung Moo-Ro,

Seoul, Korea TEL. 272-8905

* 이 協會誌에 게재된 내용은 반드시 本會의 公式的인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.